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시행

- 사용불가 내역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개선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8일(수)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제도 취지 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어도 고시 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만 규정돼 있어 질의를 통해 재확인 하는 등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 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기술지도제도 :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 도서지역 제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 기회없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감독 및 처벌 대폭 강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업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조항: 총 129개(형벌 50개, 과태료 79개)

또,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시, 범위만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서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훈령)’ 을 잇따라 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 을 확정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2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범위만 사업장 1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강화하여 감독의 과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석면 등 유해물질 관리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공포

앞으로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와 석면, 발암성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 · 처리업무 등 근로자에게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 · 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등은 작업 전후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11.7.25.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8항) 개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환경미화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지자체 등)의 위생시설(세척시설, 휴게시설, 탈의시설 등) 협조의무(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그리고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또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브로모프로판 등)

**자손에 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폐놀 등)

따라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 · 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운반, 보관 등)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분

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이는 지금까지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출입금지’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0.12.8. 강원도 소재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